

아래 문서들은 몇 개 외국어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FDA는 널리 있는 국제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본 번역본들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본 번역본들이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당청(廳)은 가능한 한 영어 원본에 충실한 번역본들을 입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번역본들이 영어 원본만큼 정확하거나, 분명하거나 또는 완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본 문서들의 공식 원본은 영어 원본입니다.

<
 식품안전현대화법(F
 SMA) 농산물
 안전규정 최종안
 >의 한국어 번역본
 로스앤젤레스 지사

1. FDA 발표 내용 주소

<https://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fsma-final-rule-produce-safety#subscribe>

2. 발표 제목:

<식품안전현대화법(FSM

A) 농산물안전규정
 최종안>

3. 발표 내용

☐ 농산물 안전규정 최종안

FDA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 농산물 안전 규정은 2016년 1월 26일자로 확정되었고, 농장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날짜는 농장의 종류 혹은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아래의 "규정 준수 일자" 참조). 본 규정에서는 사람의 섭취를 위해 재배한 과일 및 채소의 안전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최초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최소 준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에 처음 제안된 후 다양한 공청회를 거쳤으며, 제안된 수정안을 반영하여 더욱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최종 규정을 정하였다.

"농장" 및 관련 용어의 정의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최종 예방통제 규정(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에서 개정되었고, 해당 용어에 대한 동일한 정의가 농산물 안전 기준(Produce Safety

Rule)을 제정하는 규정에서도 사용되었다. 유일한 활동이 농장의 정의에 해당하는 운영장은FDA에 식품 업체로서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예방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농장의 정의, 면제 및 농산물 안전에 대한 수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운영장에 대한 설명은 "면제 및 특례" 아래 도표와 함께 제공되어 있음.)

☐ 규정 준수일자

1. 새싹채소(Sprout)를

제외한 일반 농산물 본 규정 준수 일자

- 2018년 1월 26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00,000 이상인 사업장
- 2019년 1월 28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0,000 이상 \$500,000 미만인

- 소규모 사업장
- 2020년 1월 27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000이상
\$250,000 미만인
최소 규모 사업장

2. 새싹채소의 재배와 관련한 최종 규정 준수 일자

- 2017년 1월 26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00,000 이상인
사업장
- 2018년 1월 26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0,000 이상
\$500,0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 2019년 1월 28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 판매액이
\$25,000이상
\$250,000 미만인
최소 규모 사업장

3. 농업용수에 관하여 수정된 규정 준수 일자

- 2022년 1월 26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00,000 이상인
사업장
- 2023년 1월 26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0,000 이상
\$500,0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 2024년 1월 26일:
지난 3년 동안
평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000이상
\$250,000 미만인
최소 규모 사업장

4. 경우에 따른 면제 자격이 있는 농장에 대한 수정된 규정 준수 일자

- 2020년 1월 1일:
라벨 요구사항
(해당하는 경우)

5. 경우에 따른 면제 자격을 증명하는 기록의 소유

-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

□ 핵심 요구 사항

1.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규정은 최초로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한 농산물 경작기준을 마련하였고, 농업용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m 수질 : 최종 규정에서는 부칙에서 제안한 수질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차용하고 있다. 최종 규정에서는 두 가지 미생물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는 분변 오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대장균의 존재 여부에 기반한 것이다.

일반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물은

혹여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생물이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농산물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는 수확 중 및 수확 후에 손을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 식품 접촉면에 사용된 물, 수확 중이나 수확 후에 농산물에 직접 사용되는 물(얼음 제조용 포함) 및 새싹채소 위한 관개 설비에서 사용되는 물 등이 있다. 본 규정에서는 만약 일반 대장균이 검출된 경우 즉시 그와 같은 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같은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이전에 교정조치를 취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배 중인 농산물(싹 제외)에 직접 사용되는 농업용수에 관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기하 평균(GM)과 통계 임계값(STV)이라는 두 가지 값을 토대로 한 것이다. 샘플의 GM은 물 100mL당 일반 대장균 126CFU 이하, 샘플의 STV는 물 100mL당 일반 대장균 410CFU이하여야

한다.

1) GM은 평균이므로 수질의 중심적인 경향으로, 용수 샘플에 포함된 일반 대장균의 평균 수량이라고 불리는 특징을 나타낸다.

2) STV는 수질의 변동성(강과 운하에 배설물 등을 유입시킬 수 있는 비나 강의 고수위 상태와 같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장균 수치)을 나타낸다. 이것은 매우 단순화된 검사 방법이지만 샘플의 90퍼센트가 측정값 이하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FDA는 농장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수 샘플 데이터를 입력하여 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기준은 데이터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일반 대장균 수치가 때때로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여 수질에 발생하는 미미한 변동으로 인해 농장에서 용수를 사용 중단해야 하는 가능성을 감소(이와 같은 용수 사용에 대해 처음에 제안한 원본 규정과 비교할 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이와 같은 기준은 농업용수의 미생물학적 수질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새싹채소를 제외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동안 수원 사용에 대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수 관리 도구로서 제안된 것이다.

- 만약 용수가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1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최초에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용수를 보유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 후 농장의 작물에 해당 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다음의 예가 있다.

1) 최종 관개 작업과 수확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최대 4일 연속)을 두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미생물이 들판에서 소멸하도록 한다.

2) 수확과 최종 저장에 이루어지는 시간 사이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미생물이 소멸하게 하거나,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적절한 시간 한도 내에 세척과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제거한다.

3) 용수를 처리한다.

m **검사** : 최종 규정에서는 부칙에서 제안된 특정 용도로 처리되지 않은 용수의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차용하고 있다. 본 규정은 여전히 수원의 유형에 따라 검사 빈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채용한다(예: 지표수 또는 지하수).

- 자라고 있는 농산물(새싹채소는 제외)에 직접 사용되는 처리되지 않은 지표수(외부 영향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간주함)를

검사하는 경우, FDA는 농장에서 2년에서 4년 사이에 가능한 한 수확기에 가장 근접하게 수집한 최소 20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최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 최초 조사 결과는 GM 및 STV(이 두 수치는 "미생물 수질 프로필"로 지칭함) 계산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용수가 미생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1) 최초 조사를 실행한 후부터는 매년 최소 5개의 샘플을 수집하여 GM 및 STV 계산 결과를 갱신하는 연간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5개의 새 샘플과 현재에서 가까운 이전 15개 샘플을 합하여 GM 및 STV를 다시 계산하며, 이를 통해 해당 용수가 여전히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확인을 위한 20개 샘플의 단계적 데이터 집합을 생성한다.

- 자라고 있는 농산물(새싹채소는 제외)에 직접 사용되는 처리되지 않은 지하수의 경우, FDA는 농장에서 재배 기간 동안이나 1년 사이에 가능한 한 수확기에 가장 근접하게 수집한 최소 4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최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최초 조사 결과는 GM 및 STV 계산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용수가 미생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1) 최초 조사를 실행한 후부터는 매년 최소 1개의 샘플을 수집하여 GM 및 STV 계산 결과를 갱신하는 연간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개의 새 샘플과 현재에서 가까운 이전 3개 샘플을 합하여 GM 및 STV를 다시 계산하며, 이를 통해 해당 용수가 여전히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확인을 위한 4개 샘플의 단계적 데이터 집합을 생성한다.

- 일반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처리되지 않은 지하수의 경우, FDA는 농장에서 재배 기간 동안이나 1년 사이에 처리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한 초기 검사를 최소 4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용수가 의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1) 만약 4개의 최초 샘플 검사 결과가 일반 대장균 비검출 기준을 충족하면, 그후부터 검사는 일년에 한 번 최소 1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연간 검사에서 미생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농장에서는 재배 기간이나 1년 사이에 최소한 4번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 본 규정에서 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으로부터 농업용수를 조달하거나본 규정에서 정하는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용수—를 처리한 경우 이를 검사할 의무는 없다(농장에서 공공 상수도 시스템 검사 결과나 해당 용수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정 준수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2.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

m 두엄(Raw Manure):
FDA는 오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로 두엄을 뿌리는 시간과 수확 기간 사이의 일수에 대한 위험 분석 및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토양 개량제란 두엄을 포함하여 식물의 성장을 위한 화학 및 물리적 조건을 개선하거나 수분 유지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토양에 추가하는 물질을 말함).

이 경우 FDA는 토양에 접촉하는 작물을 위해 두엄을 뿌리는 간격을

120일로 하고, 토양에 접촉하지 않는 작물의 경우 농장이 간격을 90일로 정한 USDA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기관은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두고 위험 분석 및 연구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오염 가능성을 감소하는 신중한 한 단계로 간주한다.

최종 규정에서는 두엄과 같이 동물에서 얻은 처리되지 않은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는 이를 뿌리는 동안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산물에 접촉하지 않고, 이를 뿌린 다음에는 해당 농산물에 접촉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안정화된 퇴비:
박테리아(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종, 분변 대장균군 및 대장균 0157:H7 포함) 검출량에

제한을 설정하는 미생물 기준은 두염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토양 개량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본 규정에서는 이 기준을 만족하는 과학적으로 인증된 퇴비 제조 방법 두 가지를 차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만든 안정화된 퇴비는 이를 뿌리기 전이나 뿌린 후에 농산물에 접촉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새싹채소(Sprouts)

m 본 규정에는 식품 매개 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새싹채소의 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새싹채소가 자라는 데 필요한 따뜻하고 다습하며 양분이 충분한 조건 때문에 새싹채소는 위험한 미생물에 특히 취약하다.

- 새싹채소의 섭취와 관련된 것으로 1996년과 2014년 사이 미국에서 새싹채소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기록된 리스테리아 집단 발병을 포함하여, 43건의

집단 발병, 2,405건의 질병, 171건의 입원 및 3명의 사망이 보고되었다.

m 새싹채소에 특정된 요구 사항은 다음의 예와 같다.

- 새싹채소를 튀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씨앗 또는 콩을 처리하는 것(또는 적절한 서류를 구비한 씨앗/콩 재배자, 유통업자 또는 공급업체의 처리에 의존하는 것)
- 새싹채소를 튀우는데 사용되는 씨앗 또는 콩 속이나 표면에 위험한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게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각 생산 분량의 새싹채소에서 이를 위해 소비한 관개용수나 각 생산 분량에서 공정 중에 있는 새싹채소에 대해 특정한 병원균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새싹채소는 이와 같이 요구되는 병원균 검사가 음성인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없음).
- 재배, 수확, 포장 및

저장 환경에 리스테리아 종 또는 리스테리아 균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

- 새싹채소의 재배에 소비한 관개용수, 새싹채소 및/또는 환경 샘플의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교정 조치를 취하는 것(새싹채소를 재배하는 업체는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장에 비해서 본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허용되는 시간이 짧다. 이들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1년에서 3년이 허용되며 수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가축 및 야생 동물

m 본 규정은 풀을 뜯어먹는 동물(예: 가축)이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작업 동물에 의존하는 농장의 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야생 동물(예: 사슴이나 야생 돼지)에 의한 침입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농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최소한의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농장에서 재배 지역을 눈으로 점검하고 적용을 받는 모든 농산물을 그 수확 방법에 상관없이 수확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특정 상황의 경우 본 규정에서는 농장에서 재배 기간 동안 추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에 의한 잠재적 오염 가능성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경우, 농장으로 하여금 이후 수확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에는 영향을 받은 지역에 깃발을 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m 최종 규정에서 동물이 농작물을 뜯은 시기부터 수확까지의 대기 시간을 요구하는 규정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FDA는 농장에서 자발적으로 농장의 상품 및 업무

절차에 적절한 대기 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필요한 경우 FDA는 향후 그러한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m 공고된 부칙에 기술된 바와 같이 농장은 외부 재배 지역에서 동물을 격리하고, 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재배 지역이나 배수 구역의 울타리에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본 규정에 기술된 어느 조항도 그러한 조치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 직원훈련 및 건강과 위생

m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원이 본 규정이 적용되는 농산물이나 식품 접촉면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 상태인 경우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해야 함(즉, 아픈 사람이나 전염된 사람에 의한 농산물의 오염 및 식품 접촉면 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화장실 사용 후와 같은 특정한 경우 손을 철저히 씻고 건조하는 것과 같이 본 규정이 적용되는 농산물이나 식품 접촉면을 처리하거나 만질 때 위생 관리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함
- 방문자에게 별도의 화장실 또는 세면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방문자가 본 규정이 적용되는 농산물 및/또는 식품 접촉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m 본 규정이 적용되는 농산물 및/또는 식품 접촉면을 다루는 농장 직원과 그들의 감독자는 건강 및 위생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특정 주제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m 본 규정이 적용되는 농산물 및/또는 식품 접촉면을 다루는 농장 직원과 그들의 감독자는 할당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훈련, 교육 및 경험 모두를 갖추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훈련(예: 직장에서 제공하는 훈련)에 병행한 교육 또는 경험(예: 현재 할당 받은 직무와 연관된 업무 경험)이 포함될 수 있다.

6. 설비, 도구 및 건물

- 본 규정에서는 설비, 도구 및 건물로 인해서나 부적절한 위생으로 인해 농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 관련된 기준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온실, 발아실 및 기타 관련 구조물과 화장실 및 세면 장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 본 규정이 적용되는 농산물 및 식품 접촉면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에는 설비 및 도구의 적절한 저장, 관리 유지 및 청소 등이 있다.

□ 제외규정

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m 신선 농산물(Raw Agricultural Commodity)이 아닌 농산물(신선 농산물은 원상태 혹은 자연 상태로

소비되는 농산물로,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산물을 의미함)
m FDA가 가공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농산물(예:

아스파라거스, 강낭콩, 가지, 호박, 감자, 고구마 등)
m 식량이 되는 곡류(예: 보리, 쌀, 밀 등)
m 지난 3년간 농산물 연평균 매출액이 \$25,000 이하인 농장
m 농장전용 혹은 개인용으로 경작된 농산물

□ 규정변경 혹은

특례(편차)

본 규정은 각 주 및 미국으로 식품수출을 하는 외국정부기관에 본 규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FDA에 이러한 규정의 수정을 요청할 경우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성명

FDA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종 성명(EIS)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간의 건강 및 사회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의 안전 규정 발표하였다. EIS 초안은 2015년 1월에 발행되었으며, 이후 최종 EIS를 작성하였고, 2개월에 걸쳐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FDA는 농산물 규정을 최종 확정할 때 최종 EIS에 포함된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m EIS에서는 FDA가 제안한 원본 규정 및 부칙에서 정한 조치와 각 조항에 대한 다수의 대체 조치들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조치를 평가하였다. 최종 규정의 조항은 FDA에서 선호하는 대안으로서 ROD(Record Of Decision)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ROD는 최종규정에 관한 결정에 EIS 조사 결과가 어떠한 형식으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본 기관이 선호하는 대안은 FDA가 경제, 환경, 기술 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한 끝에 본 기관의 법적 임무

및 책임을 가장 잘 충족하는 것으로 믿는 조치이다.

m 농산물 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공공 건강에 중대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 EIS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EIS에서도 농장에서 지표수가 아닌지 하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모든 농산물 규정은 용수에 관한 조항에 추가된 유연성으로 인해 경영상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지하수 부족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 최종 EIS에서는 또한 다른 농장 소유주들에 비해 평균 수입이 30퍼센트 낮은 아메리칸 인디언 농장 소유주는 본 농산물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운영 비용 인상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훈련 및 기술 지원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현재 운영 중인 FDA FSMA 식품 안전 기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계에서 FSMA 규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돕는 중심적인 정보 출처를 제공하고 있다.

□ 협력기관

m FDA는 다음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포괄적 훈련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 농산물 안전 연합

<https://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produce-safety-network>

- 새싹채소 안전 연합: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draft-guidance-industry-compliance-and-recommendations-implementation-standards-growing-harvesting>

- 미국 농무부의 국립 식량 농업 연구소 (소규모 및 중간 규모 농장과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 농업 초심자, 사회적으로 약한 농업 종사자 및 소규모 농산물

도매업자에 식품 안전 훈련,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 협력 계약 파트너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부족 농장 운영을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 FDA는 또한 농업 커뮤니티, 특히 소규모 및 극소 규모 농장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의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서 협력 파트너, 토지 지원 대학, 산업 협회, 외국 파트너, 식품 안전 및 응용 영양공동 연구소(JIFSAN) 및 기타 관계자와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 FDA는 농산물 안전 규정의 이행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미국 주정부 농부부 연합회(NASDA)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추가 정보

- 규정 원문 (FDA-2011-N-0921):

<http://www.regulations.gov/#!home>

- 자주 하는 질문: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ory/FSMA/ucm247559.htm#Produce_Rule

-
- 농장의 정의: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62213.pptx>

- 최종규정 영향 보고서:

<https://www.fda.gov/about-fda/economic-impact-analyses-fda-regulations/summary-standards-growing-harvesting-packing-and-holding-product-human-consumption-final-rule>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종 성명:

<https://www.fda.gov/media/94334/download>

- FDA FSMA 기술 지원 네트워크: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59719.htm>